

2022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검 토 보 고 서

## 1. 제안경위

-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의안번호 : 제879호
- 다. 제출일자 : 2022. 5. 30.
- 라. 회부일자 : 2022. 6. 1.

##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 결산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 3. 결산안 개요

#### 가. 일반회계

##### 1) 세입결산

#### 세 입 결 산 현 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A)-(B)	미수납액 처리		수납율(% (B/A))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2022	837,897	854,904	841,370	13,534		13,534	98.4
2021	827,289	852,069	848,928	3,141		3,141	99.6
2020	786,692	818,883	812,075	6,808		6,808	99.2

- 세입은 당초 예산액이 8억 3,789만원으로 8억 5,490만원을 징수 결정하고 8억 4,137만원을 수납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8.4%가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1,353만원이 발생하였음.

##### 2) 세출결산

#### 세 출 결 산 현 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변경	전용	이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율)
2022	1,923,989	32,185		5,049			1,956,174	1,798,674		157,500 (8.1%)
2021	1,934,336						1,934,336	1,675,987	32,185	226,164 (11.7%)
2020	2,432,708				18,000		2,432,708	2,153,251		279,457 (11.5%)

- 예산현액은 19억 5,617만원이며, 이 중 17억 9,867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8.1%인 1억 5,750만원이 발생함.

### 3) 예산의 이용 · 전용 · 이체 · 변경사용

- 예산의 이용 없음.
- 예산의 전용 없음.
- 예산의 이체 없음.
- 예산의 변경사용 : 품질시험소 건설자재 품질시험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505만원을 변경하여 발광분광분석기 고장에 따른 수리비용으로 사용하였음.

### 4) 예비비 지출

- 예비비 지출 없음.

### 5) 전년도 이월사업비

- 전년도 이월사업비 : 품질시험소 시험장비 및 행정장비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3,218만원을 이월함.

###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없음

### 7) 집행잔액

- 집행잔액은 1억 5,750만원이며 이는 예산현액 대비 8.1%에 해당하는 규모임.

## 집행잔액 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응율 (%)	비고
2022	1,956,174	157,500	8.1%	
2021	1,934,336	226,164	11.7%	
2020	2,432,708	279,457	11.5%	

### 〈 발생원인별 내역 〉

- (기술심사담당관) 집행사유 미발생 : 11백만원
  - 건설기술 심의회 운영 : 11백만원
- (기술심사담당관) 집행잔액 : 44백만원
  - 건설 기술심의회 운영 : 8백만원
  - 건설기술 향상교육 및 기술정보제공 : 6백만원
  - 기술용역 자체설계를 위한 설계도면 작성지원 : 3백만원
  - 기본경비 : 27백만원
- (기술심사담당관) 낙찰차액 : 8백만원
  - 기술용역 자체설계를 위한 설계도면 작성지원 : 7백만원
  - 계약금액조정 검증 프로그램 유지관리 : 1백만원
- (품질시험소) 집행잔액 : 82백만원
  - 건설자재 품질시험 : 23백만원
  - 품질시험소 청사유지관리 : 9백만원
  - 기본 경비 : 50백만원
- (품질시험소) 낙찰차액 : 12백만원
  - 시험장비 및 행정장비구입 : 12백만원

## 4. 검토 의견

### 가. 일반회계

#### 1) 세입결산

### 세입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수납율(% (B/A))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2022	837,897	854,904	841,370	13,534		13,534	98.4
2021	827,289	852,069	848,928	3,141		3,141	99.6
2020	786,692	818,883	812,075	6,808		6,808	99.2

#### 가) 개요

- 세입예산현액은 8억 3,789만원이었으나 실제 8억 5,490만원이 징수 결정되었으며 이 중 수납액은 8억 4,137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8.4%이며, 미수납액은 1,353만원이 발생하였음.

#### 나) 세수추계 (결산서 p.12~13)

- 당해연도 징수결정액 8억 5,490만원은 예산액 8억 3,789만원의 102%에 해당하며, 이 중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간의 차를 유발한 주된 세입항목을 살펴보면 [표 1]과 같음.

[표 1]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차가 크게 발생한 주요 항목

(단위: 천원)

편성목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차액 (b)-(a)	사 유
<b>기술심사담당관</b>					
그외수입	9,600	6,597	6,597	△3,003	○심의수수료 부과대상인 기관(공사, 공단)으로부터 심의요청 건수 감소
지난년도수입	-	3,465	-	3,465	○기술인력 변경신고 지연 과태료 추후 납부
과징금	-	30,000	30,000	30,000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 사유 발생
기타과태료	38,613	46,925	36,857	8,31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 미이수 과태료 부과
<b>품질시험소</b>					
주차요금수입	-	9,198	9,198	9,198	○코로나19 확산방지차 자가용 이용 수입 증가 및 세목 착오 추계
기타사용료	6,470	675	675	△5,795	○청사 부설주차장 수입 세목 착오 추계로 차액발생
증지수입	781,635	753,954	753,954	△27,681	○건설경기 악화, 앵미터 도입·차량 반도체 공급부족 등으로 인한 세수 감소
기타이자수입	-	203	203	203	○기관명의 통장 발생이자 세입조치
불용품매각대금	-	900	900	900	○신차 구매에 따른 기존차량 매각비용
그외수입	1,579	2,986	2,986	1,407	○과년도 착오지급 가족수당 세입처리 등

○ 먼저 기술심사담당관 세입 항목 중,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의 차가 크게 나타난 주요 항목들을 살펴보면,

- ‘그외수입’은 예산액 960만원 대비 징수결정액은 660만원 (68.7%)으로 300만원 감소하였는데, 그 사유는 건설기술심의

수수료와 관련하여 공사, 공단 등으로부터 정밀안전, 설계심의 등의 요청 건이 당초 예측(12건→8건)보다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 동 항목의 세수 추계는 최근 3년간('19년~'21년)의 평균징수액을 기준으로 부과금액을 산정하였는데, 이는 심의요청이 예상되는 설계용역, 정밀안전진단용역 등에 대한 정확한 수요 예측이 어려운 데서 기인한 것으로 이해됨.

○ '지난년도수입'의 경우 기술인력 변경신고 지연 과태료로 예산액을 편성하지 않았으나 실제로는 347만원이 징수 결정되었는데,

- 이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91조1)에 근거한 건설기술용역업 퇴사자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로 1개 업체에 대해 6건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부과연도에 납부되지 못하고 수년간 체납됨에 따른 것임.

- 상세내역을 살펴보면 동 업체는 '18년부터 지난해 회계 마감 기준('22. 12. 31일)까지 지속적으로 과태료를 체납하였으나, 현재는 가산금을 합한 357만원 전액을 납부('23. 4. 28일, '23. 5. 22일)한 것으로 확인([표 2] 참조)이 되나.

---

1) 「건설기술 진흥법」제91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략)

5. 제26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6. ~ 16. (후략)

[표 2] 건설기술용역업 퇴자사 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 내역

(단위 : 원)

연번	법인명	과세년월	본세	가산금	합계	비고
1	오션엔지니어링(주)	2018-04	375,000	272,250	647,250	2023. 5. 22. 납부
2	오션엔지니어링(주)	2018-04	375,000	272,250	647,250	
3	오션엔지니어링(주)	2018-04	375,000	272,250	647,250	
4	오션엔지니어링(주)	2018-04	375,000	272,250	647,250	
	소 계	4건	1,500,000	1,089,000	2,589,000	
5	오션엔지니어링(주)	2021-02	375,000	119,250	494,250	2023. 4. 28. 납부
6	오션엔지니어링(주)	2021-03	375,000	114,750	489,750	
	소 계	2건	750,000	234,000	984,000	
	합 계	6건	2,250,000	1,323,000	3,573,000	

- 동 과태료의 경우 오랜기간 체납으로 징수에 어려움을 겪었던 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적극적인 수납 제고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과징금’<sup>2)</sup>은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에게 ‘허위등록, 부정행사, 감리소홀’ 등의 영업정지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금액으로 예산액을 편성하지 않았으나 실제로는 3천만원이 징수결정 되어 전액 수납되었는데,

- 이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sup>3)</sup>에 따른 기술인력 등록기

2) ‘과징금’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제32조(과징금)에 따른 부과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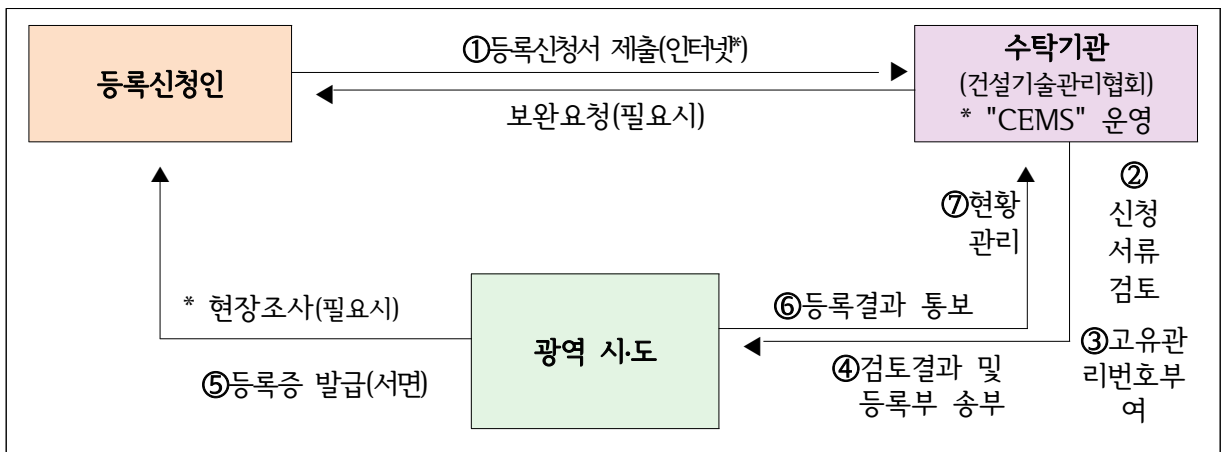
- 「건설기술 진흥법」제32조(과징금) ① 시·도지사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6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등) ①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전문분야별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중 건설공사의 계획·조사·설계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려는 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이어야 한다.



준 미달 사항을 50일 이내에 보완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 행정 처분 기준<sup>4)</sup>에 따라 영업정지가 부과된 해당 업체가 영업정지와 과징금 중 과징금 납부를 택함으로 인해 과징금을 징수한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음.

[표 3]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대한 등록절차



- ‘기타과태료’의 경우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의 ‘기술인력 변경 신고’ 지연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건설기술인 교육 미이수’ 행정처분 요청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sup>5)</sup>으로 예산액 3,861만원

4) 「건설기술 진흥법」 제31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6. (생략)  
7.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한 후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그 날부터 50일 이내에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6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별표6]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취소·영업정지 처분 및 과징금 산정 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		2차		3차	
		처분 기준	과징금 금액	처분 기준	과징금 금액	처분 기준	과징금 금액
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한 후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그날부터 50일 이내에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7호	영업 정지 3개월	3천 만원	영업 정지 6개월	6천 만원	영업 정지 12 개월	1억 2천 만원

5)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5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91조제

대비 징수결정액 4,692만원으로 831만원이 증가하였는데,

[표 4] 건설기술용역업 기술인력 변경신고 지연 과태료 예산액 및 징수결정액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징수결정액 (b)	수 납 액	(b)-(a)
2022년	38,613	46,925	36,856	9,969
2021년	38,702	102,485	101,645	63,783
2020년	35,000	40,065	40,065	5,065
2019년	35,000	20,325	20,325	-14,675

- 이는 최근 3년간('19년~'21년) 평균 부과 건수를 반영하여 세입 추계를 하였으나 협회로부터 위반건수를 통보받아 과태료를 부과하는 구조로 인해 예측치보다 위반 통보 건수가 많았기 때문임.

[표 5] 과태료 세수추계 산출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술용역업 변경신고지연 과태료</li> <li>- '19~'21년도 평균 징수액(전망액) (20,325천원 + 40,065천원 + 55,448천원) ÷ 3 = 38,613천원</li> <li>· 안전점검 종합보고서 미제출 과태료 : 없음</li> <li>※ '16년 이후 부과 내역이 없으므로 '22년도 없을 것으로 전망</li> </ul>
---

- 다음으로, 품질시험소 세입 항목 중 '기타사용료'는 품질시험소 부설주차장과 본관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sup>6)</sup>하는 것이며, 예산액 647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5호,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14호 및 제16호에 해당하는 자(「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및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와 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에 한정한다)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22조(일반재산 대부 등의 준용) 행정재산 사용료의 요율, 일시 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에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징수결정액은 67만원으로 579만원이 감소하였음.

[표 6] 기타사용료 세수추계 산출근거

<p>① 청사 사용료 수입 : 674,900원          - (태양열발전시설 사용료) : 674,900원          [공시지가(2,932,000원)×건축부지면적(1,278.8㎡)×옥상지수(0.018)]×요금(10/1000)=674,900원</p> <p>② 주차요금 수입 : 5,795,000원          산출액 : 5,569,800+225,500 = 5,795,000원          산출내역 - 정기주차 : 459,100원×12월×1.011 = 5,569,800원          - 일일주차 : 19,000원×12월×1.011 = 225,500원</p> <p>① + ② = 647만원(기타사용료 세입추계액)</p>
---

- 이는 '20. 7. 21일 개정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의 「별표 8」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표 7] 참고)에서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요금수입은 '주차요금수입'으로, 타 과목에 속하지 않는 사용료 수입은 '기타사용료'로 편성토록 함에 따라 품질시험소 주차수입의 경우는 '주차요금수입'으로 편성·처리해야 하나 이를 정확히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것임.

[표 7] 기타사용료 세입과목 개정사항(2020. 7. 21.)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8]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현 행				개 정			
과목 구분		현행 과목구분 설정		과목 구분		개편 과목구분 설정	
관항목	세목			관항목	세목		
210 경상적 세외수입				210 경상적 세외수입			
212 사용료수입				212 사용료수입			
	08	기타 사용료	1. 공원, 운동장, 묘지, 복지회관, 시민회관 등의 공공시설 및 재산의 사용료 수입 2. 기타특별회계의 온천급탕, 중기사용, 주차장사용 등 사용료 수입 3. 타과목에 속하지 않는 사용료수입		08	주차 요금 수입	1.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요금수입
					09	기타 사용료	1. 타 과목에 속하지 않은 점용료 및 사용료 수입

- 동 사안의 경우 전년도 결산에서도 동일하게 지적된 사안이나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향후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당부된다 하겠음.
- ‘주차요금수입’은 품질시험소 청사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직원 및 민원인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수입으로, 세입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으나 징수결정액 920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앞서 ‘기타사용료’에서 언급한 바와 같음.
- ‘증지수입’은 건설공사 품질점검 수수료, 택시미터 검정수수료, 각종 계량기 수수료이며 예산액 7억 8,164만원 대비 징수결정액 7억 5,395만원으로 2,768만원이 감소하였는데,
  - 이는 건설경기 악화 및 택시의 앱미터기 도입, 차량 반도체 공급부족으로 인한 수요 감소 등에 따라 점검 및 검정 건수가 당초 예상보다 감소('21년:11,394건→'22년:9,500건)한 것에 따른 것임.
- ‘기타이자수입’은 기관명의 통장에 대한 과년도 이자수입으로, '22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나 20만원을 징수결정 하였는데, 이자수입은 매년 발생할 여지가 있고, 최근 금리 인상으로 그 금액이 커지고 있으므로 해당 항목에 대해서는 세입과목으로 세수를 추계하여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됨.
- ‘불용품매각대금’은 공용차량 구매에 따른 기존차량 매각 비용으로서 예산액을 편성하지 않았으나, 실제로는 징수결정액 90만원 발생함.

[표 8] 불용차량 매각 현황

회계연도	차명	차량번호	최초등록일	사용년월	내구연한	매각가액 (폐차대금)
2022년	포터Ⅱ 시티밴 (소형화물)	89저8286	2011. 7. 5	11년 4월	10년	900,000원

- 이는 서울시가 불용차량을 처분할 경우 먼저 타 기관으로의 관리전환을 타진하고 불가할 경우 양여 또는 폐기(매각)하는 절차<sup>7)</sup>로 진행하기 때문에 예산편성 당시 반영이 어려웠다는 입장이나,
  - 해당 세입 누락은 지난해 결산 시에도 동일하게 지적받았던 사안으로,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불용품 매각의 경우 이에 대비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고 이를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음에도,
  - 금회 동일하게 세입을 누락하였다는 것은 업무 당사자 간의 인수인계 및 행정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의회 결산 승인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노력이 전혀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방증하는 대표적 사례라 할 것이므로 시정되어야 할 것임.
- ‘그외수입’은 수도미터 검정 수수료 158만원을 예산액으로 계상하였으나 141만원이 증가된 299만원이 징수결정 되었는데,
- 이는 가족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수급대상의 부양가족 수에

7) 「서울시 경유차 퇴출 추진계획」 서울특별시장 방침-제166호(2020.7.6.)

착오가 발생하여 지급된 가족수당의 반납액으로, 동 수당의 경우 가족 구성원의 변동으로 인하여 수당이 변하므로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세출과 행정력 낭비를 방지해야 할 것임.

## 다) 미수납액

○ 기술심사담당관의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전년(314만원) 대비 1,039만원 증가한 1,353만원이며, 세부내역은 지난연도 미수납액 346만원, 기타과태료 미수납액 1,007만원임.

- 지난연도 미수납액 346만원은 서울시의 지속적인 징수 노력으로 올해 전액 징수완료('23.5.22일)하여 특이사항은 없으나, 기타과태료 미수납액은 지난해(84만원)와 비교하여 1,098.8%나 증가하였는데,

- 이는 '22. 6월 국토교통부<sup>8)</sup>로 부터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sup>9)</sup>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받지 않은 건설기술인에 대하여, 서울시가 과태료<sup>10)</sup>를 부과하고 징수하도록<sup>11)</sup> 함

8)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제도 및 과태료 부과 기준 안내」(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2457호, 2022. 6. 9.)

9)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건설기술인의 육성)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인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훈련 이수 실적을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등급 산정에 활용할 수 있다.

10) 「건설기술 진흥법」 제91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건설기술인

2. 제20조제3항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경비부담을 이유로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준 사용자

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② 법 제91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이

에 따라 회계내 징수하지 못한 미수납액 1,007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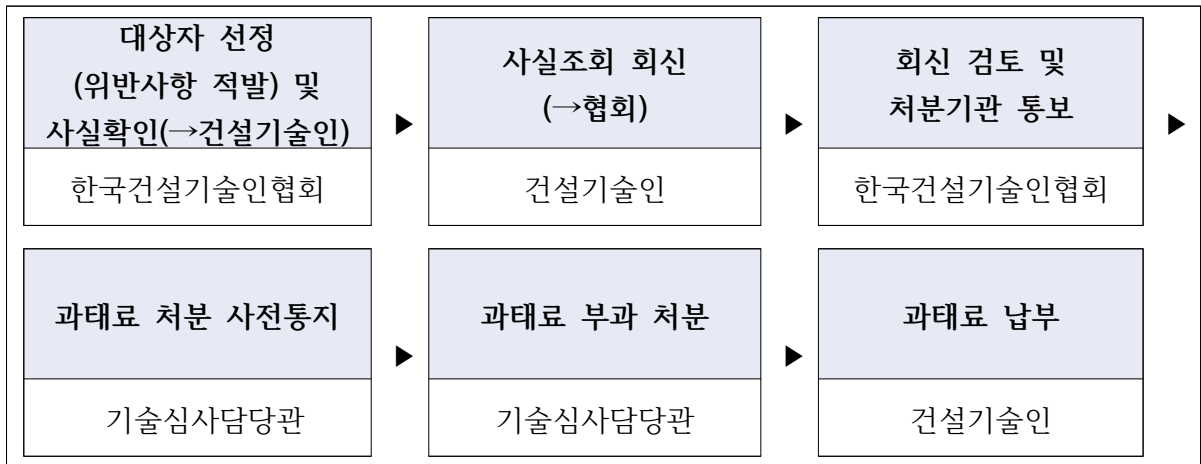
- 동 과태료의 경우 지난해 최초로 부과하여 징수한 만큼 체계적인 징수시스템을 구축하기에는 절대적 시간이 부족했다는 점에서 이해되기는 하나, 체납이 장기화될 경우 습관성 납세태만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징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표 9] 2022년 건설기술인 교육 미이수 과태료 부과 현황

(’22. 12월 기준, 단위 : 건/천원)

과태료	부과건수		수납		미수납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설기술인 교육 미이수 과태료	126	28,425	87	18,597	39	10,069

[표 10] 건설기술인 교육 미이수 과태료 부과 절차



영 제11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제외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하고, 법 제91조제3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5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91조제2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5호,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14호 및 제16호에 해당하는 자(「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및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와 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에 한정한다)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 2) 세 출 결 산

### ■ 기술심사담당관

#### 세 출 결 산 현 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변경	전용	이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율)
2022	758,009	-	-	-	-	-	758,009	694,535	-	63,474 (8.4%)
2021	741,081	-	-	-	-	-	741,081	683,394	-	57,687 (7.8%)
2020	918,097	-	-	-	-	-	918,097	812,480	-	105,617 (11.5%)

#### 가) 개 요

- 예산현액은 7억 5,800만원으로 이 중 91.6%인 6억 9,453만원을 지출하고 8.4%인 6,347만원이 불용되었음.

#### 나) 집행잔액

- 기술심사담당관의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7억 5,800만원 대비 8.4%인 6,347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작년 대비 0.6%p 증가(7.8%→8.4%)하였음.



[표 11] 2022회계연도 집행잔액 현황

(단위: 천원)

연번	세부사업명	예산내역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율(%)
1	건설기술심의회 운영	433,183	19,441	4.5
2	건설기술향상교육 및 기술정보제공	48,835	6,210	12.7
3	서울특별시 건설상 시상	15,175	0	0.0
4	기술용역 자체설계를 위한 설계도면 작성 지원	90,000	10,059	11.2
5	계약금액조정 검증 프로그램 유지관리	44,510	884	2.0
6	기본경비	126,306	26,880	21.3
	합 계	758,009	63,474	8.4

- 먼저, ‘건설기술향상교육 및 기술정보제공’ 사업은 기술직 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 및 건설 환경 변화에 따른 신속한 기술 정보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4,884만원 대비 12.7%인 621만원을 불용하였음.
- 불용사유는 기술직 공무원 기술향상을 위해 대면 직장교육을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 재확산 방지 차원에서 직장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함에 따른 것임.
-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특수상황을 감안할 때, 부득이한 점은 인정되나,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 중앙정부의 거리두기 정책이 장기화되고 있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를 고려한 보수적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아쉬움이 있음.

- 다음으로, ‘기술용역 자체설계를 위한 설계도면 작성 지원’ 사업은 전문기술을 요하지 않는 단순·반복 공종에 대해 공무원들이 자체설계로 전환하여 공무원들의 설계역량을 강화하고 기술력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금회 예산현액 9,000만원 대비 11.2%인 1,006만원을 불용하였는데, 이는 기관별 재배정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특이사항은 없음.

[표 12] 최근 3년간 예산집행 내역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액	재배정액	집행액	집행률	집행부서
2022	90,000	86,833(96.5%)	79,941	88.8%	8개 기관 10개 부서
2021	90,000	89,985(99.9%)	86,022	95.6%	11개 기관 15개 부서
2020	95,000	88,163(92.8%)	81,995	86.3%	6개 기관, 10개 부서

- 동 사업은 총 33건의 사업에 8,683만원을 배정하여 7,994만원을 지출하였는데, 이는 총 4억 787만원의 예산 절감효과를 불러온 것으로 해당사업은 투입예산에 비해 높은 사업효과를 가져오고 있고,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홍보와 면밀한 수요조사를 통해 최근 높게 나타나고 있는 집행률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사료됨.

[표 13] 자체설계를 위한 설계도면 작성 지원사업 효과

(단위 : 천원)

연번	기관(부서)	사업명	배정 금액	집행 금액	외주용역 예상금액	절감액
	계		86,833	79,941	487,815	407,874
1	서울시립대학교 (시설과)	교내 시설물 유지보수 및 소규모 개선 공사	10,750	10,189	126,063	115,874
2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목동운동장 녹지대 정비공사 외 1건	9,675	9,263	38,367	29,104
3	서부공원여가센터	경의선숲길공원 정비사업 외 7건	21,784	19,166	47,137	27,971
4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송현동 열린녹지광장 조성공사	7,395	7,025	38,137	31,112
5	동대문구	왕산로291 주변 하수관로 정비 외 5건	8,600	7,000	115,101	108,101
6	서초구	서초, 양재권역 공원수목식재사업 외 2건	9,030	8,759	16,131	7,372
7	중랑구	면목로30길 주변 하수관로 개량공사 외 7건	16,680	15,620	24,664	9,044
8	강동구	올림픽로 556 주변 하수관로 정비공사	2,919	2,919	82,215	79,296

○ ‘기본정비’는 해당 부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에 소요되는 금액으로 예산현액 1억 2,631만원 중 9,942만원을 지출하고 21.3%인 2,689만원을 불용하였는데,

- 주된 불용사유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현장방문 및 출장 자제 지침<sup>12)</sup>으로 인해 발생한 국내여비 잔액 2,669만원으로, 이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재유행이라는 상황에서 당해 실시한 2회의 추경편성에서 적극적으로 고려되지 않은 것은 아쉬움으로 남음.

12)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한 서울시 공무원 복무지침 안내」(서울특별시 인사과-36057, 2022.7. 29.)

〈복무지침 주요 내용〉

□ 주요내용

- 코로나19 유증상자는 즉시 부서에 신고 후 부서장 판단 하에 증상 완치 시까지 재택근무 등 실시 ※ 코로나 검사 시 공기, 격리 치료 시에는 병가 사용
- 일상 속 감염 차단을 위해 사무실 내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 수칙 준수 철저
- 부서장 판단하에 재택근무 및 시차출퇴근제 등 적극 활용
- 회의, 행사 등 개최 시 방역 지침 고시 확인 및 준수 철저
- 워크숍·회식 최소화 및 방역수칙 준수 철저

[표 14] 기본경비 예산 집행내역

(단위:천원)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예산집행	집행잔액	불용율(%)
기본경비	소 계	126,306	99,426	26,880	21,3%
	사무관리비	70,406	70,406	0	0%
	공공운영비	1,800	1,610	190	10.6%
	국내여비	49,000	22,310	26,690	54.5%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100	5,100	0	0%

다) 예산이용 · 전용 · 이체 · 변경 사용

- 예산의 이용 · 전용 · 이체 · 변경사용은 없음.

라) 예비비 지출

- 예비비 지출은 없음.

마) 명시이월

- 명시이월 없음.

바) 사고이월

- 사고이월 없음.

## ■ 품질시험소

### 세 출 결 산 현 황

(단위: 천원)

회계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변경	전용	이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율)
2022	1,165,980	32,185		5,049			1,198,165	1,104,139		94,026 (7.8%)
2021	1,193,255						1,193,255	992,593	32,185	168,477 (14.1%)
2020	1,514,611				18,000		1,514,611	1,340,771		173,840 (11.5%)

#### 가) 개 요

-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218만원을 포함한 11억 9,816만원이고, 예산변경은 발광분광분석기 고장에 따른 부족한 수리비를 ‘건설자재 품질시험’ 사무관리비 505만원에서 공공운영비로 융통하여 사용함에 따른 것이며,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92.2%인 11억 413만원이고 7.8%인 9,403만원이 불용되었음.

#### 나) 집행잔액(결산서 p.21)

- 품질시험소의 집행 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7.8%인 9,403만원으로 전년(14.1%) 대비 감소(6.3%p ↓) 하였음.

[표 15] 2022회계연도 집행잔액 현황

(단위: 천원)

연번	세부사업명	예산내역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율(%)
1	건설자재 품질시험	332,409	22,749	6.8
2	시험장비 및 행정장비구입	322,525	12,146	3.8
3	품질시험소 청사 유지관리	162,533	8,855	5.4
4	기본경비	380,698	50,276	13.2
	합 계	1,198,165	94,026	7.8

- 품질시험소의 집행잔액 중 ‘건설자재 품질시험’사업의 경우 예산현액 3억 3,241만원 대비 6.8%인 2,275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사무관리비가 2,108만원 불용됨에 따른 것임.
  - 사무관리비의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워크숍, 강사 초빙, 현장점검, 시험장비 교정 등의 미집행 잔액에 해당하는데, 이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정부의 거리두기 정책 강화에 따른 것임.
- ‘기본경비’의 경우 예산현액 3억 8,070만원 대비 13.2%인 5,028만원이 불용되었는데 금회 불용의 주된 사유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국내여비 집행잔액 4,062만원과 행사 등의 축소에 따른 업무추진비 잔액 136만원 임.
  - 동 불용 또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것으로 예산편성 시 계상의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나, 코로나19가 '20년도부터 확산되어 2년이 경과되었다는 점에서 비추어보면

동 불용사유들은 예측 가능했다 판단되므로,

- 당해년도 2번의 추가경정예산에서 적극적인 감추경을 통해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지 않은 것은 아쉬움이 남음.

다) 예산이용 · 전용 · 이체 · 변경 사용

- 품질시험소 예산변경은 ‘건설자재 품질시험’ 1건으로 발광분광분석기의 예기치 못한 고장에 따라 수리비용이 부족하여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505만원을 변경 사용한 것임.

[표 16] 예산 변경 내역

(단위: 천원)

예산과목				2022 예산액		변경액	
정책	단위	세부	예산과목	변경 전	변경 후	증	감
			계	258,226	258,226	5,049	5,049
건설자재 품질수준 향상	건설공사 품질관리 사업	건설자재 품질시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00-201-01)	185,804	180,755	-	5,049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100-201-02)	72,422	77,471	5,049	-

- 이는 발광분광분석기([표 17] 참조)의 진공펌프 고장이 발생하여 이를 교체하기 위한 비용이 1,337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시험장비 수리를 위한 예산과목인 공공운영비에서 이를 지출하려고 하였으나, 편성예산이 부족함에 사무관리비 505만원을 공공운영비로 융통하여 사용한 것으로,
- 이는 내구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장비의 고장인바, 급작스

러운 고장 발생의 경우 예측이 어려운 점은 인정되나 고장 발생으로 인해 업무 지연 등이 발생하는 만큼 평상시부터 철저한 점검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표 17] 발광분광분석기 장비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델명 : ARL 4460 OES</li> <li>· 제조사 : 써모피셔사인티픽코리아주식회사(스위스)</li> <li>· 구매가 : 105,899천원</li> <li>· 구매년도 : 2013. 7.22</li> <li>· 주요사양 : 금속 0.00001% 이상 분석</li> <li>· 장비용도 : 건설자재에서 사용하는 철강류 화학 성분(Si, P, S 등) 분석</li> </ul>
---	---

**라) 예비비 지출**

- 예비비 지출은 없음.

**마) 명시이월**

- 명시이월 없음.

**바) 사고이월**

- 사고이월 없음.

[붙임]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 없음.